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객·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확대(제20조제3항제2호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1. (생략) 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u>3명</u>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3. (생략) ④·⑤ (생략)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u>2명</u>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안전복지과	
연락처	044-201-3863